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30
----------	-------

발의연월일 : 2022. 11. 14.

발의자 : 윤준병 · 김성주 · 김홍걸

이달곤 · 신정훈 · 양정숙

위성곤 · 김태년 · 이성만

이원욱 · 김승원 · 김교홍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를 두어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에 있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함)하면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 및 주사 후 어느 시점까지 반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더라도 약효가 떨어져 감염우려가 있는 소나무류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방약제를”을 “예방약제(약효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약제를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반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